

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59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	: 1999. 11. 19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	: 1999. 11. 19	
다. 상 정 일 자	: 1999. 11. 26	총무위원회 상정
라. 의 결 일 자	: 1999. 11. 27	총무위원회 의결

2. 조성사유

-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

3. 주요골자

-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
-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
- 기금지급은 년 2회(상·하반기 각 1회)
- 기금지급 인원 및 금액은 27명 10,000,000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
- 기금재원의 이자수입으로 년2회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
- 자금예치 및 심사기준 대상자 선정방법 등 지급에 따른 세부계획을 충분히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심사기준, 대상자 선정방법, 대상인원은

● 답 :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상 대상
중·고등학생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칙에 정해진 27명
한도 내에서 대상자 선정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9. 11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